

【제 1293 호】



2016년 7월 26일 (화)

고양시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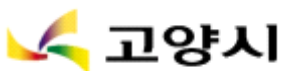
차 례

입법예고

고양시 공고 제2016-1143호	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고양시 공고 제2016-1144호	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6
고양시 공고 제2016-1145호	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2

공 고

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-146호	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	17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

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6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 -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3. 주요골자
 - 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.(안 제2조 및 안 제6조)
 - 나.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외의 규정을 삭제함.(안 제7조)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16년 8월 16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(지역경제과)

○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)

○ 전 화 :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(031-8075-3556)

○ 팩 스 : 031-8075-4912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 견	비 고

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법 제3조”를 “법 제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영 제2조”를 “영 제3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3조제2항”을 “법 제5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3조제6항”을 “법 제5조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「도로법」 제8조”를 “「도로법」 제10조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1항”을 “법 제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지역경제과
입안자	과장 성명	지역경제과장 이정진
	팀장 성명	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조
	담당자 성명·전화	신각식 (031-8075-3556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 략)</p> <p>1. “가스사업 등”이란 <u>법 제3조</u>에 따라 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.</p> <p>2. “충전사업”이란 <u>영 제2조</u>에서 규정한 용기충전사업, 자동차용기충전사업, 소형용기 충전사업 및 가스 난방기용기 충전사업을 말한다.</p> <p>3. “판매사업”이란 <u>법 제3조제2항</u>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.</p> <p>4. “영업소 설치”란 <u>법 제3조제6항</u>에 규정된 설치를 말한다.</p> <p>5. ~ 7. (생 략)</p> <p>8. “도로”란 「<u>도로법</u>」 제8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.</p> <p>제6조(허가의 제한) 시장은 <u>법 제4조제1항</u>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제7조(위해방지) 시장은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,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u>법 제5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<u>영 제3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3. -----<u>법 제5조제2항</u> ----- -----.</p> <p>4. -----<u>법 제5조제6항</u>----- -----.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「<u>도로법</u>」 제10조----- -----</p> <p>제6조(허가의 제한) <u>법 제6조 제1항</u>....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6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 -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3. 주요골자
 - 가. 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5조)
4. 자치법규안 : 별첨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16년 8월 16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(주택과)

○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)

○ 전 화 : 주택과 주택정책팀(031-8075-3114)

○ 팩 스 : 031-8075-4932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 견	비 고

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법 제73조제1항” 을 “법 제84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법 제2조제3호” 를 “법 제2조제5호” 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운영조건)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조건은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10조에 따른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주택과
입안자	담당관 성명	주택과장 김대식
	팀장 성명	주택정책팀장 이상희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두연 (031-8075-311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법 제73조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과 범위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 <u>법 제84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국민주택사업”이라 함은 <u>법 제2조제3호</u>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법 제2조제5호</u>----- ----- ----- 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용자조건) <u>국민주택기금의 용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운영조건에 의한다.</u></p>	<p>제12조(운영조건) <u>주택도시기금의 운영조건은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10조에 따른다.</u></p>
<p>제15조(보험가입 및 신용보증)</p>	<p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준비금) 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용자지원한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 및 「보험업법」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입주자가 보험에 가입시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지않고(거부할 경우 포함) 본인을 수취인으로 할 경우 시장은 보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삭제</u></p>	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6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2. 개정이유
 -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3. 주요골자
 - 가.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.(안 제7조제3항)
 - 나. 법령의 위임 없이 일정시간에는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정비함.
(안 제8조제1항)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16년 8월 16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환경보호과)

-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)
- 전 화 :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(031-8075-2654)
- 팩 스 : 031-8075-4924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견	비고

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표 9”를 “규칙 별표 9”로 한다.

-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·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환경보호과
입안자	담당관 성명	환경보호과장 송경환
	팀장 성명	대기관리팀장 류제일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홍수 (031-8075-265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소음의 측정방법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에 의한 소음측정결과 「<u>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</u>」 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의 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 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.</p>	<p>제7조(소음의 측정방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「<u>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</u>」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특정장비 사용의 제한) ① <u>시장은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·장비에 대하여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<u>별표 9의 기계·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특정장비 사용의 제한) ① <u>시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·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<u>규칙 별표 9</u>.....</p>

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

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)로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
2. 공고기간 : 2016.07.26. ~ 2016.08.10.(15일간)
3. 공고대상 : “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” 참조
4. 공고내용

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(☎031-8075-477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.

2016. 07. 26.

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

은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소유자	은행정지명령 사유	은행정지명령일자	비고
1	18어213*	시보레익스프레스	배*웅	소유자 신청	2016.07.18.	
2	51마711*	K5	이*윤	소유자 신청	2016.07.18	
3	경기91노402*	마이티 II 슈퍼퀵(터보)	박*식	소유자 신청	2016.07.18	
4	38오412*	아반떼	㈜우리*****일산점(상품용)	소유자 신청	2016.07.19	
5	19고965*	모닝	변*영	소유자 신청	2016.07.21	
6	19모996*	S600	㈜우리*****일산점(상품용)	소유자 신청	2016.07.21	
7	66구436*	CC 2.0 TSI	정*경, 음*혜	소유자 신청	2016.07.21	